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73
----------	-----

2022. 1. 20.(목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: 오영탁 의원 등 8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월 20일

-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오영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관계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## ○ 관계법령 명칭 변경

-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→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 
(안 제2조)
-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 안 제10조, 제11조제2항)
-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 →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(안 제12조제3항)

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## 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## 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##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  
」”을 “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”으  
로 한다.

제10조 중 “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”를 “「충  
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  
조”를 “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9조”로  
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, “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 
“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공사중단 건축물”이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「<u>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공사중단 건축물”이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「<u>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기금은 「<u>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.</p>	<p>제10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기금은 「<u>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.</p>
<p>제11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(생략) 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<u>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p>	<p>제11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<u>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p>
<p>제12조(기금회계공무원 등) ① · ② (생략)</p>	<p>제12조(기금회계공무원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「<u>충청북도 재무회</u> <u>계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	<p>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 한 사항은 「<u>충청북도 예산 및</u> <u>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 을 준용한다.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제4조(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4. 18.>

1.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
2.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
3.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·간접적 원인
4.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. 19.>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, 건축관계자,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건축물·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.

④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·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. 19.>

제6조(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자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(이하 "정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4. 18.>

1. 정비사업의 기본방향
2. 정비사업의 기간
3.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
4.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

5.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이나 활용 계획
  6.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
- 6의2. 제11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
7.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
  8. 그 밖에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시·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안을 해당 공사 중단 건축물의 건축주,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,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과의 협의를 거치며,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정비계획을 자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)** ① 시·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없이 철거, 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4. 18.>
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에 책임이 없는 건축관계자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### 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,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